

UN 통합목록 수록농약의 오해



정영호

농약연구소 농약안전성과장

「UN화학물질통합목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소비자단체들은 이 목록에 수록된 화학물질들을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금지시킨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며 이를 사실인 것처럼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다.

「UN화학물질통합목록」은 국제연합 환경계획국(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산하의 국제독성화학물질등록기구(International Register of Potentially Toxic Chemicals, IRPTC)가 의약품, 농약, 산업화학물질 및 소비자 제품에 대하여 세계각국의 사용규제 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 각국에서 이들 화학물질의 등록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합목록을 작성하여 매2년마다 발간하고 있는 것이다.

1991년에 발간된 제4집에는 총 643종의 화학물질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의약품이고 농업용 화학물질(농약)은 253종이다.

의약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약도 수록된 253종

모두에 대해 전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각국의 농업환경여건에 따라 규제 내용이 상이하다. 즉 각국의 기후, 풍토, 병해충 및 잡초의 발생양상, 재배작물의 종류, 영농형태 및 규모등에 따라 사용하는 농약도 서로 달리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적용작물의 제한, 사용시기의 제한, 취급자의 제한 등과 같은 규제를 하고 있으며 농약의 사용에 따른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각국의 농업여건에 따른 사용규제 정보를 UNEP/IRPTC가 수집, 통합하여 발간한 것이 「UN화학물질통합목록」이다. 이 목록 제 4판에 수록된 농약중 국내 사용중인 농약과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농약을 비교하여 보면 표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선진국에서 사용중인 농약이 더 많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중 「UN화학물질통합목록」에 수록된 48종도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등록, 사용되고 있는 농약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농약의 사용은 각국의 농업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맹독성 농약으로 사용을 금지한 테믹(aldicarb), 잔류성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기염소계 농약인 린덴(γ -BHC), 알드린(Aldrin) 등이 미국이나 유럽의 각 나라에서 자국의 농업여건에 따라

표1. 통합목록 수록농약중 국내외 사용현황(제 4판, '91)

총 수록농약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253 종	48	56	56	66	69

‘플러스(+)’ 적 효과가 크므로 현재에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UN화학물질통합목록」은 세계각국이 자국내에서 사용규제 내용을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것이나 우리나라의 신문이나 TV등 언론매체에서는 “세계각국에서 사용금지된 농약이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사용된다”는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지금에도 이와같은 무책임한 보도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즉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일지 모르나 의식은 아직 후진국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지? 적어도 과학관련 보도는 정확한 근거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에 책임있는 보도로 일반국민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농약이 하나도 없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모두가 선진 외국에서 개발되어 등록, 사용되고 있는 것을 도입하여 우리의 농업여건에 타당성 여부와 안전성을 검토한 후에 고시하여 농민에게 보급하고 있다. 외국에서 도입된 농약이 우리농민의 손에 들어가기까지는 3단계의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첫단계는 농약의 품목고시를 위한 시험단계로서 수많은 시험신청제종 예비시험성적과 국내외의 잔류성 및 독성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이들 농약이 우리의 농업여건에 필요성 여부와 고시되어 사용하였을 때 사람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여 독성이 높거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농약은 시험자체를 보류하여 농약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두번째 단계는 시험결과를 토대로 고시여부를 검

표2. 통합목록 수록농약의 국내 규제현황(제4판, '91)

수록 농약	품목 폐지	미등록	제한 사용
253 종	24	181	48종

토하는 것으로 국내의 농업환경내에서 실시한 약효, 약해 및 잔류성 시험결과와 급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시험 등 16항목에 이르는 광범위한 독성시험 결과를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6개의 농약관리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농약만을 선별하여 다시 보건사회부, 환경처 등 관계부처 관계관 및 사용자단체(농민) 및 소비자단체 들로 구성된 농약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한 후에 고시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농약의 품목고시 검토시에는 선진 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국내 고시를 보류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사용금지된 농약이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마지막 단계는 이미 고시되어 사용중인 농약의 안전성 재평가 단계로서 과학기술의 발달 및 의학의 발전으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의 개발로 사용중인 농약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안전성 종합평가제 도를 도입하여 위해성이 인정되면 품목을 폐지하거나 생산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정부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농약을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보전을 위하여 여러단계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서 관리하고 있다.

「UN화학물질통합목록」에 수록된 253종의 농약에 대하여도 표2에서와 같이 24종은 국내에서 사용되었으나 위해성의 우려가 있어 품목을 폐지한 것이며 181종은 아직 우리나라 농업여건에서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 고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8종이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이나 이들농약 뿐만아니라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농약에 대해서 적용작물의 제한, 사용장소의 제한, 사용시기의 제한 등의 적절한 규제조치를 두어 사용하게 하고 있다. **농약정보**